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처벌 수준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여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직원에 대한 전시업무 교육 이수 및 병무청장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0643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통지서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의 내용·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요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사회복지요원의 청원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통지서 전달방법 구체화(안 제4조의2 신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 직접 전달,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구체적인 전달방법 명시

나. 전역증 재발급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위임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다. 사회복지요원의 휴가 기준 정비 및 개선(안 제59조)

- 1) 사회복지요원의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
- 2) 부모 등 간호에 따른 별도의 청원휴가를 가족돌봄휴가에 통합하여 연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3)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범위를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 4) 그 밖에 대규모 재난 발생에 따른 재해구호휴가 및 난임치료 시술에 따른 청원휴가 부여
- 5) 사회복지요원이 복무기관을 재지정받고 이동하는 경우, 건강검진, 헌혈 참가, 올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 참여, 감염병 관련 예방접종 및 감염 여부 검사에 따른 공가 신설

라.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기준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5조의3제3항)

- 마.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기준 중 연구전담요원 학위 기준에 석
· 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안 제72조제1항)
- 바. 병역지정업체의 인원배정 제한 근거에 산업지원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7조제3항)
- 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학위취득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다른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에 한하여 전직 허용(안 제85
조제3항)
- 아. 재외동포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재외동포청장 및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5조의7제1항)
- 자.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항목 중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행국가’를 추가로 공개하고, 주소 공개 범위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명확화(안 제160조제3항)
- 차.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에 필요한 교육 내
용·방법 및 절차,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등의 사항 구체
화(안 제16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 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전달을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벌금에서 과태료로 처벌 수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171조 및 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대주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등)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
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촬영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4.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일시, 장소 등 징집·소집 또는 의무이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일시, 장소 등 징

집·소집 또는 의무이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알리는
방법

제4조의3(중전의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8항”을
“법 제6조제11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1일”을 “3일 이내”
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10일”을 “20일”로, “15일”을 “25일”로 하고, 같
은 호 아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연”을 “가족돌봄휴가 연”으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자목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를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
우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
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재해구호휴가 5
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
회복무요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

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정자 채

취일 1일

제59조제1항제4호에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65조의3제4항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받고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경우

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경우

사.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경우

제65조의3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구전담요원”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후단 중 “업체와”를 “업체, 가상자산·유흥 또는 교육교재 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체와”으로 한다.

제8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학위 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박사학위 취득 전에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자연계대학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제155조의7제1항 중 “요구”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병역 정보의 주체는 재외동포청장 및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6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여행국가(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등 여행국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9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3조제7항에 따라 병무담당 직원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로 매년 1회,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⑩ 법 제83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 일정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교육 이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⑪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병무청장은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매년 1회 정기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71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와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	법 제95조제5항	30	50	10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169조, 제171조 및 별표 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2호바목

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59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사회복지무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사회복지무요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사회복지무요원

제3조(전문연구요원의 전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녀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59조제1항제2호다목 및 아목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세대주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등) 법 제6조제7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u> <u>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u> <u>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u> <u>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촬영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u> <u>4.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일시, 장소 등 징집·소집 또는 의무이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u>		

	<u>로 전송하는 방법</u>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 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일시, 장소 등 징집·소집 또는 의무이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알리는 방법
<u>제4조의2</u>(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① (생략) ② <u>법 제6조제8항</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u>제4조의3</u>·<u>제4조의4</u> (생략) <u>제5조</u>(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 ~ ③ (생략) ④ <u>제1항</u> 및 <u>제2항</u>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서식 및 세부적인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u>제59조</u>(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u>제4조의3</u>(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6조제11항</u>----- ----- ----- -----. 1. ~ 3. (현행과 같음) <u>제4조의4</u>·<u>제4조의5</u> (현행 제4조의3 및 제4조의4와 같음) <u>제5조</u>(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u>제59조</u>(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지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2. 청원휴가

가. · 나. (생 략)

다.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
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
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라. (생 략)

마.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
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사. (생 략)

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1) ~ 3) (생 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라. (현행과 같음)

마. -----
----- 3일 이
내

바. ----- 20
일-----
----- 25일-

사. (현행과 같음)

아. 다음-----

----- 가족돌봄휴가 연

1) ~ 3) (현행과 같음)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자.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
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
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
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
녀를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
-----.

-----.

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
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
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재해구호휴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
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장기
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
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
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3. (생략)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 다.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경우: 정자 채취일 1일

3. (현행과 같음)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65조의3제4항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받고 복
무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
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
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
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경우

바.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경우

사.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적인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
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경우

5. (생략)

② ~ ⑤ (생략)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⑦ (생략)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
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
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경우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
하는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
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
의 선정기준) ① -----

-----.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다만, 연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나. (생략)

2.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 ② (생략)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1. -----
----- 연구전담요원(석사
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
합된 과정을 수료한 연구전담
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 -----

가. 나. (현행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생략)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의 전직) ①·② (생략)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1. (생략)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재 개발 등과 관련되는 업체와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의 전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학
위 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박사학위 취득 전에 병역지정
업체인 다른 자연계대학원(한

3. ~ 13. (생략) ④ ~ ⑩ (생략)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출력·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u>요구</u>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②·③ (생략)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② (생략)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u>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u> 3. ~ 13. (현행과 같음)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출력·증명 등) ① ----- ----- ----- ----- <u>신청</u>----- -----<u>. 이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병역 정보의 주체는 재외동포청장 및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같다.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2. · 3. (생략)

④ ~ ⑥ (생략)

제169조(전시특례) ① ~ ⑦ (생략)

<신설>

<신설>

---.

1.-----
-- 주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여행국가(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등 여행국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9조(전시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3조제7항에 따라 병무담당 직원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로 매년 1회, 3시간 이

<신 설>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 4와 같다.

⑩ 법 제83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 일정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교육이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⑪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병무청장은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매년 1회 정기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제5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139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2641